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규정 개정(안) 공포 시행

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심의 의결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☐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내역

○ 일시 : 2016. 3. 25.(금), 16:00~16:45

○ 장소 : 15층 소회의실

○ 참석 : 사규심의위원 11명 중 8명 참석

☐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

연번	규 정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처리 계획
1	민원처리에관한내규 개정안	○ 법률 제명(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→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)변경에 따라 용어 수정(제2조, 제2조 제1항~2항, 제5조 제1항~2항, 제7조 제1항~3항) ○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실에서 조사처리(별표1의 3호)	**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규정 개정**	**공포 시행**
2	재산관리규정 개정안	○ 제23조(임대료 등) ①항 수정 -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가액으로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결정 ○ 제23조(임대료 등) ②항 신설 - 각 호 따르는 사항을 ②항에 신설 등	**수정의결**	〃
3	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	○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이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조항 개정 ○ 축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합병으로 농·수·축협중앙회를 농·수협중앙회로 개정	**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규정 개정**	〃

붙임 1. 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
2. 민원처에관한내규 개정(안) 1부
3. 재산관리규정 개정(안) 1부
4.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1부
5. 일상감사요청서 1부. 끝.

★담당자	**조병길**	팀장	**박정현**	기획조정실장	**이영민**	사장	**박현출**

협조자				감사실	**감사실**

시행 기획팀-903 (2016.04.01) 접수 (2016.04.01)

우 138-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/ http://www.garak.co.kr

전화 02-3435-0531 전송 02-3435-0595 / wind@garak.co.kr / 공개